< 천안우체국 공고 제 2024-68호 >

천안우체국 제18회 상시계약집배원(일반상시_기간제_성환) 채용 재공고

천안우체국에서 집배 및 소포배달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 11. 14.

천안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 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담당업무	비고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일반상시)**	1명	**성환우체국** (천안시 서북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업무	

2. 근무 조건

○ 신분 : 계약직 근로자(비공무원)

* **기간제(3개월)**로 운영되며, 추후 무기계약 상시집배원 채용 시 지원 가능하지만 기간제 경력이 반드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보 수 : 기본급 + 수당 : 약 2,420,000원(세전)

- 기본급 : 1,920,740원
- 수당 : 운전수당, 직무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급식비 등
-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기타 :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 근무시간 : **주 5일(화 ~ 토), 1일 8시간(기본근무 : 07:30 ~ 16:30)**

* 단, 업무처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로근무 또는 휴일근로 가능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ㅇ 업무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개당 최대 30kg의 소포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단, 관리 규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나. 자격증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위 두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자

(참고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중 조건 : J(다륜형)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는 한정면허임)

다. 지역제한 : 없음

라. 응시자격 제한

ㅇ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지 않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자는 응시불가

ㅇ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입법 개정 추진 중인바, 동법 개정시 그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단, 법정 가점은 법률에 따라 전형별로 가점 부여**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근무경력

- 집배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체국택배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택 · 통상 · 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상시계약집배원	서류전형	실기 -이륜차 주행 -체력검정	면접시험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충실성실성	정보화 자격증	무사고 경력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40점	20점	20점	10점	5점	5점

나. 제 2차 시험 : 실기시험 -이륜차 주행, 체력검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 체력 검정(3종목) :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소포상자 이동하기

- 검정기준표 : 붙임참조

- 체력 검정 면제 :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제출자(6개월이내 취득분)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무료)

다.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또는 영상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과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영상 면접시험의 경우)

※ 영상면접은 PC(권장)와 스마트폰으로 참여 가능, 자세한 영상면접 참여 방법은 붙임「영상면접 참여 방법 안내」참조

ㅇ 제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 나라일터, 충청지방우정청, 천안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4. 11. 19. (화) ~ 11. 21. (목), 09:00~18:00까지

다. 접수처 : 천안우체국 2층 지원과(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05)

- 전자우편 접수 시 : tax30002380@korea.kr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
(등기우편은 마감일 익일특급 발송분에 한함)

※ 전자우편으로 응시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는 PDF · JPG 파일로 제출

※ 채용부서의 접수확인 답신이 없는 경우, 기한 내 채용부서를 통해 접수완료 여부 확인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모집공고 : 2024. 11. 14. (목) ~ 11. 21. (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 11. 19. (화) ~ 11. 21. (목)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1. 25. (월)

라. 실기 및 (영상)면접시험 : 2024. 11. 26. (화)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1. 29.(금)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기시험이 통과된 자 중 면접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천안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마.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

바.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

이 나타나야하며,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사. 주민등록초본 1부

ㅇ **주소변동 이력, 병역사항*(전체)*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 병역 필 및 면제 여부 확인을 위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병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아.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차.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체력 100」 인증서는 실기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취득분을 실기시험 전까지 제출할 경우 실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천안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천안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천안우체국 방문신청, 팩스(0505-005-1689) 또는 이메일(tax30002380@korea.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ㅇ 천안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1.31.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마.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3개월 이내로 운영됩니다.

바. 상시계약집배원*(해당 직종에 한함)*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사.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우체국 지원과(041-629-2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기준표

성별 / 종목		가	부
남자	윗몸 일으키기 (기준시간: 1분)	18개 이상	17개 이하
	팔굽혀 펴기 (기준시간: 1분)	13개 이상	12개 이하
	소포상자 이동하기(20kg) (기준시간: 30초)	소포 등 우편물 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소포 등 우편물 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불가능
여자	윗몸 일으키기 (기준시간: 1분)	11개 이상	10개 이하
	팔굽혀 펴기 (기준시간: 1분)	14개 이상	13개 이하
	소포상자 이동하기(20kg) (기준시간: 30초)	소포 등 우편물 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소포 등 우편물 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불가능

※ 팔굽혀 펴기: 남자와 여자의 측정방법이 상이 (실기시험 방법 참조)

실기시험 방법

종 목	측정방법
이륜차 주행 (일반상시 응시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이륜차 시동을 건 후 직진 코스 출발선에서 대기한다. - 시험관의 “출발” 구령과 함께 준비된 직진 코스를 통과하여 맞은 편에서 회전하여 준비된 ‘S’자 코스를 통과한다. - 도착선에 정지한 후 시동을 끈다. (직진 중 긴급제동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음. 긴급제동시엔 2분 이내 통과)
윗몸 일으키기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cm 간격으로 벌리고 무릎은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 손은 머리 뒤로 깍지껴 잡는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 만을 이용하여 몸을 위로 일으켜 굽힌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상태로 돌아간다. - 누운 자세에서는 깍지 낀 양손, 어깨 등이 반드시 매트와 접촉되어야만 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 깍지를 풀거나,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등의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함
팔굽혀 펴기	[남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려 손바닥(또는 주먹)을 바닥에 대고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바닥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을 90도 이상 굽혀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여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무릎과 손바닥(또는 주먹)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팔이 바닥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을 90도 이상 굽혀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소포상자 나르기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출발선의 소포상자 앞에 선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두 팔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소포상자를 다시 들고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온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제한시간: 30초 이내 * 몸놀림과 소포 취급 태도를 통해 소포 등 우편물 취급의 가부 여부를 판단

※ 실기시험 순서 및 진행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온라인 영상면접 참여 방법**

온라인 영상면접 참여방법 안내

1. 영상면접 사전 주의사항

· **접속은 PC(노트북)** 사용을 권장
- 웹캠 등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접속 가능

※ 스마트폰 응시 Tip : 기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히 거치, 비행기 모드와 와이파이 연결을 사용하면 면접 도중 전화 수신 방지 가능

· 단말별 최신 버전의 **웹브라우저***로 접속 (※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음)

* 단말(웹브라우저) : 윈도우PC(크롬, 엣지), 맥OS(크롬, 사파리), 안드로이드OS(크롬), iOS(사파리)

· 면접 전에 **테스트 접속**(개별 고지)을 실시, 본 면접과 동일한 조건에서 접속하여 비디오·오디오 확인, 얼굴 표정이 보이도록 **구도와 조명 설정**

·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

· 면접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 녹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2. 영상면접 절차

접속 확인	⇨	본인 확인	⇨	질의응답	⇨	면접 종료
· 비디오, 오디오 점검		· 신분증 제시		·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		· 종료 안내시 나가기 클릭

3. 영상면접 접속 방법

① 웹 브라우저로 영상회의 시스템 주소(meet.onnara.go.kr) 입력 후 접속

※ 초대코드 안내 메시지(카카오톡)의 접속주소 링크를 눌러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

② 우측의 

'민간 공공기관 회의참가 바로가기' 클릭

③ **이름**(응시분야_성명)과 **초대코드**(개별 고지) 입력 후 **회의 참가** 클릭

※ 코드번호는 변경되므로 면접용으로 발송한 초대코드를 입력

④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연결상태 확인** 후 '입장' 클릭

⑤ 회의실 접속 후 **카메라와 마이크를 활성화**(

)하고 안내에 따름

4. 단계별 접속화면(PC)

①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 (meet.onnar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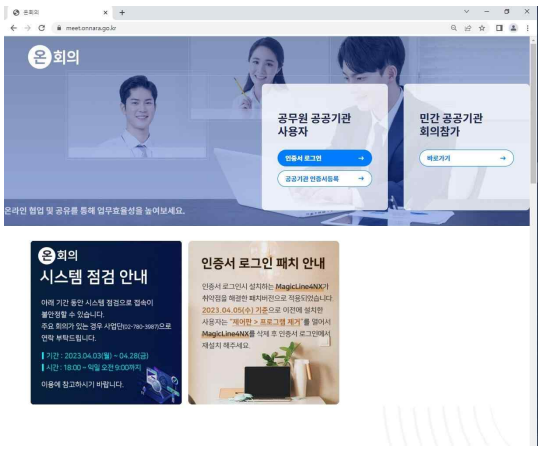

② '민간 공공기관 회의참가 바로가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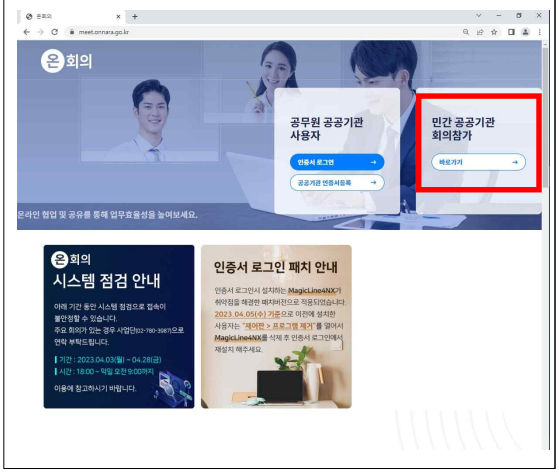

③ 이름(응시분야_성명)과 초대코드 입력, '회의 참가'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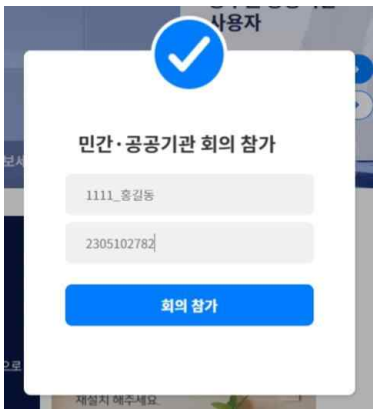

④ 장치 인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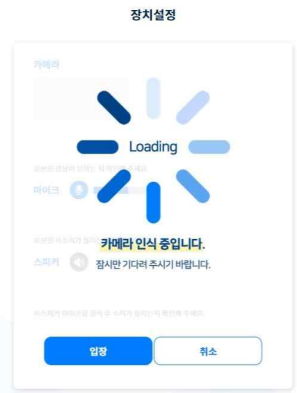

⑤ 카메라, 마이크 작동여부 확인, '입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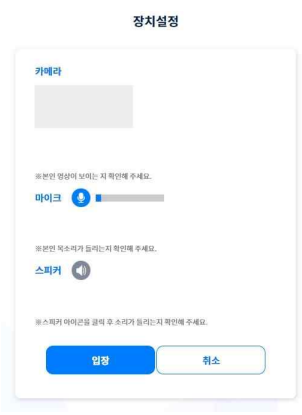

⑥ 회의실 접속 후 카메라, 마이크 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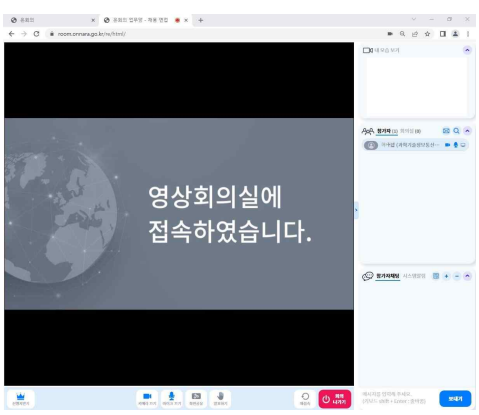

5. 단계별 접속화면(스마트폰)

① 영상회의 시스템 접속* (meet.onnar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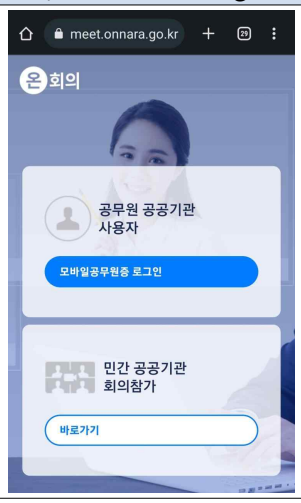

② '민간 공공기관 회의 참가 바로가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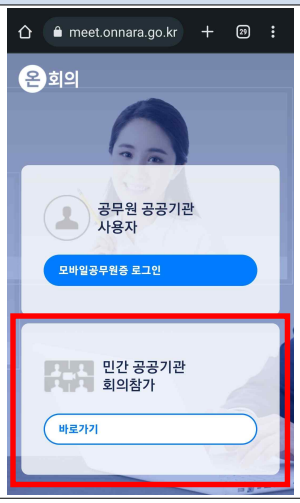

③ 이름(응시분야_성명)과 초대코드 입력 → '회의 참가'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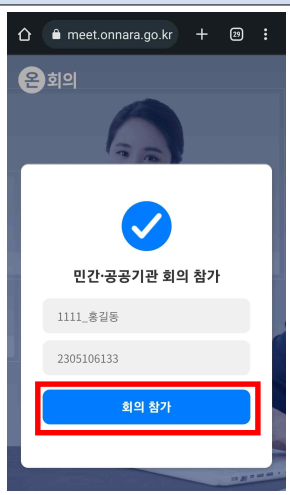

* 초대코드 안내 메시지(카카오톡)의 접속주소 링크를 눌러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

④ 장치 인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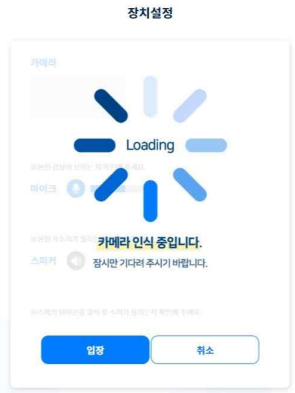

⑤ 카메라, 마스크 사용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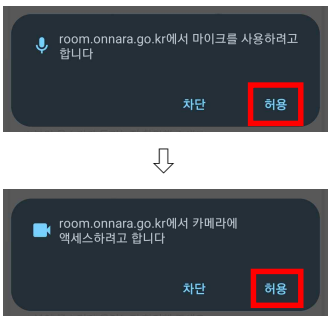

⑥ 카메라, 마이크 작동 확인 → '입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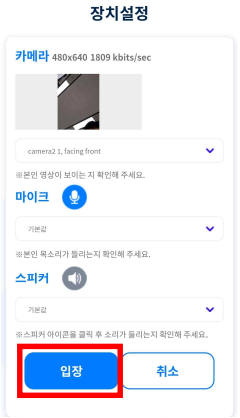

⑦ 회의실 접속 후 카메라, 마이크 켜기



※ 카메라와 마이크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 크롬 등 웹 브라우저가 카메라와 마이크에 접근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안드로이드 기준]

- 경로 : 설정 → 개인정보 → 권한 관리자 → 카메라, 마이크
- 확인방법 : 허용된 목록에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가 있는지 확인
- 조치방법 : 허용되지 않음 목록에서 웹 브라우저를 찾아 권한 부여

[iOS 기준]

- 경로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카메라, 마이크
- 확인방법 : 웹 브라우저가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
- 조치방법 : 허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허용으로 변경

※ 메뉴 경로가 상이할 경우 제조사에 문의